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02
----------	-------

발의연월일 : 2026. 4. 9.

발 의 자 : 박성훈 · 안철수 · 김기현
이달희 · 이현승 · 김성원
이인선 · 송언석 · 김기웅
고동진 · 김위상 · 강명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받거나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의 어린이제품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31조의2(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의 어린이제품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u></p>